

의안번호	2208460
의 퇴 인	이수진의원
회 답 일	2025. 5. 27.
추계번호	25B116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4조의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프트웨어나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 및 이용·보급할 수 있음(제6항 신설)	재량규정
		방송통신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또는 컴퓨터프로그램의 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제7항 신설)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44조의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안 제44조의7 제6항·제7항 신설)

- 현행법¹⁾은 음란영상 등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등을 불법정보로 규정하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정보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프트웨어나 컴퓨터프로그램을 개발 및 이용·보급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소프트웨어·컴퓨터프로그램의 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국가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재 불법정보의 유통방지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에는 불법정보의 유통방지를 위한 소프트웨어·컴퓨터프로그램 개발 및 이용·보급 관련 내용을 일부 포함하고 있음

1)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5.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 6의2. 이 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
- 6의3. 총포·화약류(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한다)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
7.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표 1] 불법정보 유통방지 관련 사업(소프트웨어·컴퓨터프로그램 개발·이용·보급 관련)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사업내용 (소프트웨어·컴퓨터프로그램 개발 및 이용·보급 관련 내용)	예산		
		2023	2024	2025
방송통신심의 위원회 지원				
- 통신심의 지원	인터넷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보통신망의 불법·유해정보 유통방지 및 건전한 정보통신 이용환경 조성 (웹하드 및 P2P 등 파일 공유사이트 모니터링을 통해 음란영상 등을 추출하여 DB로 구축 등)	1,505	1,837	1,776
- 건전한 정보문화 조성	유해정보 필터링 SW 보급 확대를 통한 청소년 보호 강화 (청소년유해정보 필터링 SW 보급·개선, 해외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등급DB 구축 및 내용등급 시스템 운영 등)	504	484	484
- 디지털성범죄 신속대응 체계구축	디지털성범죄 신속대응 체계 구축을 통한 피해자 보호 강화 (디지털성범죄정보 자동 모니터링시스템, 디지털성범죄영상물 DNA 필터링 및 오식별 신고 시스템 구축 등)	1,298	747	831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 개정안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정보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프트웨어나 컴퓨터프로그램을 개발 및 이용·보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경우, 기존 사업이 확대되거나 신규 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으나 현 시점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움
- 또한, 개정안은 해당 소프트웨어·컴퓨터프로그램의 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 시점에서 지원 대상인 공공기관·법인·단체의 종류 및 규모, 지원 대상 사업 내용 및 소요금액 등을 예측하기 곤란하여 합리적인 추계에 한계가 있음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최동완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최동완	02-6788-3746	dongwaniii@nabo.go.kr